

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(RFID) 전산수정내용 안내

□ 수급자(보호자) 통보대상 이력관리 적용(7월 4일부터 적용)

- 요양요원이 스마트장기요양(앱)을 이용하여 서비스내용을 전송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(보호자)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별도 제공하지 않아도 제공한 것으로 같음

※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“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”

- 수급자(보호자)를 통보대상으로 등록하고 통보대상자가 스마트장기요양(앱)을 설치한 경우에 한함
- 계약을 갱신하거나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통보대상을 재등록한 경우에만 한함
- 통보대상자가 변경되거나 통보대상자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등록한 경우에만 한함

※ 단, 요양요원이 서비스 내용을 전송하지 않거나 전송내용을 청구에 활용하지 않은 경우,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(보호자)에게 별도 제공하여야 함(수급자(보호자)가 요구하는 경우 포함)

- 계약이 변경되거나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익일 자동해지
 - 전산상에서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도 해지 후 재등록 필수

※ 7월 10일부터는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이도록 반영 예정

○ 용어설명

- 앱 설치일: 해당 통보대상자가 스마트장기요양(앱)을 최초 설치한 날짜(번호 변경, 생년월일 변경시 재설치일을 반영)
- 등록·해지일: 수급자(보호자)통보대상 관리화면에 등록·해지한 날
- 급여내용제공 시작·종료일: 수급자(보호자)가 실제로 급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의 시작일과 종료일(계약(인정)유효기간 내)

기관포털 화면명: 수급자(보호자)통보대상 등록이력확인(신규)

○ 화면경로

- RFID>전송단말기>수급자(보호자)통보대상 등록이력확인



수급자(보호자)통보대상 등록이력확인 npfc527m01 RFID>전송단말기

구분 ☒ 성명 ☐ 인정관리번호 통보대상 전화번호 계약종료자 포함 ☐ 조회

수급자(보호자) 단말기 목록

NO	수급자명	인정관리번호	통보대상명	전화번호	앱설치일	급여내용제공 시작일	급여내용제공 종료일	계약시작일	계약종료일
1	박	L2229926088	박	010-		20180201	20180529	20160410	20190409
2	박	L2229926088	박	010-		20180511		20160410	20190409
3	박	L2229926088	박	010-		20180628		20180302	20180905
4	유	L2229919481	원	010-		20180628	20180628	20180302	20180905
5	유	L2229919481	원	010-	20180628	20180628	20180628	20180302	20180905
6	미	L2221855927	미	010-		20180611	20180625	20150228	20190227

○ 수급자(보호자)통보대상 등록이력 및 앱 최초설치일자 확인

○ 계약종료자의 경우 “계약종료자 포함” 체크박스 체크 후 조회, 최근 4년내 계약이 있는 모든 수급자 목록 조회 가능

- 급여내용제공 시작일과 종료일을 더블클릭하면 등록 및 해지일이 팝업

※ 급여내용제공 시작일과 종료일은 해당 계약의 유효기간내로 표기됨

참고사항

○ 스마트장기요양 앱 삭제일은 별도 확인되지 않음

○ 급여내용을 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통보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앱을 설치하고 인정기간 내에 유효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만 가능함.

ex) 수급자(보호자)를 등록하여도 급여내용 제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

- 유효한 계약이 있어도 계약과 연결된 인정Seq가 만료된 경우 불가(등급변경 등)
- 인정Seq이 유효해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불가(계약종료, 미체결 등)
- 유효한 인정유효기간과 계약이 있어도 수급자(보호자)가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

주의사항

- “수급자(보호자) 통보대상 등록이력관리” 화면에 앱 설치일자 또는 급여내용제공시작일이 없는 경우 급여제공기록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
 - “수급자(보호자) 통보대상 등록이력관리” 화면에 앱설치 일자가 없는 경우 앱을 삭제 후 재설치
 - “수급자(보호자) 통보대상 등록이력관리” 화면에 급여내용제공 시작일이 없는 경우 “수급자(보호자) 통보대상관리” 화면에서 해당자를 해지 후 재등록
 - “수급자(보호자) 통보대상 등록이력관리” 화면에 현재 제공 중인 계약의 시작·종료일이 없는 경우 계약확인 후 “수급자(보호자) 통보대상관리” 화면에서 해당자를 해지 후 재등록